

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회 부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4. 4. 19(월) 이만재의원외 2인
- 나. 회부일자 : 2004. 4. 28(수)
- 다. 상정일자 : 2004. 4. 28(수) 제11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특위

2. 제 안 이 유

- 매년 결산검사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일비가 94년 개정된 이후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일비의 현실화를 위해 인상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- 본 조례 제13조중 「별표 1」에 규정된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.

4. 검 토 결 과

- 본 조례는 94년 지방자치법시행령(94. 7. 6)의 개정에 근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일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 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만원 인상된 7만원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.
- “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”에서도 각종 회의참석수당 및 위원회 수당이 현실에 맞지 않아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본료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.

-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에 맞는 일비를 지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리라 판단됩니다.

- 기타 법령의 형식이나 자구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